

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*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의 명칭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대표자 주소		전화번호	

사무소 소재지

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1.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1부 2.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.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.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·설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5.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 처리기관: 문화체육관광부